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 8~8p 번호 : 46	해설	46. 정답 ㉔ '매우충분'을 선택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. <table> <tr> <th>구분</th><th>인원 (명)</th><th>매우충분 비율(%)</th><th>매우충분 선택인원(명)</th></tr> <tr> <td>10대 (15~19세)</td><td>696</td><td>4.0</td><td>$696 \times 0.04 = 27$</td></tr> <tr> <td>20대</td><td>1,458</td><td>6.4</td><td>$1,458 \times 0.064 = 93$</td></tr> <tr> <td>30대</td><td>1,560</td><td>3.8</td><td>$1,560 \times 0.038 = 59$</td></tr> <tr> <td>40대</td><td>1,998</td><td>4.5</td><td>$1,998 \times 0.045 = 89$</td></tr> <tr> <td>50대</td><td>2,007</td><td>5.2</td><td>$2,007 \times 0.052 = 104$</td></tr> <tr> <td>60대</td><td>1,422</td><td>9.6</td><td>$1,422 \times 0.096 = 136$</td></tr> <tr> <td>70대 이상</td><td>1,357</td><td>17.9</td><td>$1,357 \times 0.0179 = 24$</td></tr> </table> 따라서 인원이 가장 적은 순서는 '70대 이상 - 10대 - 30대 - 40대 - 20대 - 50대 - 60대'이다.	구분	인원 (명)	매우충분 비율(%)	매우충분 선택인원(명)	10대 (15~19세)	696	4.0	$696 \times 0.04 = 27$	20대	1,458	6.4	$1,458 \times 0.064 = 93$	30대	1,560	3.8	$1,560 \times 0.038 = 59$	40대	1,998	4.5	$1,998 \times 0.045 = 89$	50대	2,007	5.2	$2,007 \times 0.052 = 104$	60대	1,422	9.6	$1,422 \times 0.096 = 136$	70대 이상	1,357	17.9	$1,357 \times 0.0179 = 24$	46. 정답 ㉔ '매우충분'을 선택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. <table> <tr> <th>구분</th><th>인원 (명)</th><th>매우충분 비율(%)</th><th>매우충분 선택인원(명)</th></tr> <tr> <td>10대 (15~19세)</td><td>696</td><td>4.0</td><td>$696 \times 0.04 = 27$</td></tr> <tr> <td>20대</td><td>1,458</td><td>6.4</td><td>$1,458 \times 0.064 = 93$</td></tr> <tr> <td>30대</td><td>1,560</td><td>3.8</td><td>$1,560 \times 0.038 = 59$</td></tr> <tr> <td>40대</td><td>1,998</td><td>4.5</td><td>$1,998 \times 0.045 = 89$</td></tr> <tr> <td>50대</td><td>2,007</td><td>5.2</td><td>$2,007 \times 0.052 = 104$</td></tr> <tr> <td>60대</td><td>1,422</td><td>9.6</td><td>$1,422 \times 0.096 = 136$</td></tr> <tr> <td>70대 이상</td><td>1,357</td><td>17.9</td><td>$1,357 \times 0.179 = 242$</td></tr> </table> 따라서 인원이 가장 적은 순서는 '10대 - 30대 - 40대 - 20대 - 50대 - 60대 - 70대 이상'이다.	구분	인원 (명)	매우충분 비율(%)	매우충분 선택인원(명)	10대 (15~19세)	696	4.0	$696 \times 0.04 = 27$	20대	1,458	6.4	$1,458 \times 0.064 = 93$	30대	1,560	3.8	$1,560 \times 0.038 = 59$	40대	1,998	4.5	$1,998 \times 0.045 = 89$	50대	2,007	5.2	$2,007 \times 0.052 = 104$	60대	1,422	9.6	$1,422 \times 0.096 = 136$	70대 이상	1,357	17.9	$1,357 \times 0.179 = 242$
구분	인원 (명)	매우충분 비율(%)	매우충분 선택인원(명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대 (15~19세)	696	4.0	$696 \times 0.04 = 27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대	1,458	6.4	$1,458 \times 0.064 = 93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0대	1,560	3.8	$1,560 \times 0.038 = 59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대	1,998	4.5	$1,998 \times 0.045 = 89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0대	2,007	5.2	$2,007 \times 0.052 = 104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0대	1,422	9.6	$1,422 \times 0.096 = 136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0대 이상	1,357	17.9	$1,357 \times 0.0179 = 24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인원 (명)	매우충분 비율(%)	매우충분 선택인원(명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대 (15~19세)	696	4.0	$696 \times 0.04 = 27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대	1,458	6.4	$1,458 \times 0.064 = 93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0대	1,560	3.8	$1,560 \times 0.038 = 59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대	1,998	4.5	$1,998 \times 0.045 = 89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0대	2,007	5.2	$2,007 \times 0.052 = 104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0대	1,422	9.6	$1,422 \times 0.096 = 136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0대 이상	1,357	17.9	$1,357 \times 0.179 = 242$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해설 수식 오류에 따른 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 11~11p 번호 : 60	해설	60 정답 ㉔ - A :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, 만화방 1개월, 노숙인 시설 1개월로 2달만 거주하여 입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. - B : 작년 겨울부터 올해 가을까지 여인숙에서 거주하였으므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고, 3인 가구 소득기준도 충족하므로 입주대상이다. - C :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2,189,905원이지만 월 소득이 2,200,000원이므로 입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. 따라서 해당되는 B의 월 임대료는 3천 만 $\times 1\% = 300,000$원이다.	60 정답 ㉔ - A :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, 만화방 1개월, 노숙인 시설 1개월로 2달만 거주하여 입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. - B : 작년 겨울부터 올해 가을까지 여인숙에서 거주하였으므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고, 3인 가구 소득기준도 충족하므로 입주대상이다. - C :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2,189,905원이지만 월 소득이 2,200,000원이므로 입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. 따라서 해당되는 B의 월 임대료는 (3천 만 - 50만) $\times 1\% = 795,000$원이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수정 사유	해설 수식 오류에 따른 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4 12~12p 번호 : 68	해설	68 정답 ② A씨는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으므로 실제임차료를 전액을 지원받는다. • 실제임차료 : $2,000\text{만} \times 0.04 \div 12 + 20\text{만} = 266,666\text{원}$ - B씨는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크므로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는다. • 실제임차료 : $2,500\text{만} \times 0.04 \div 12 + 15\text{만} = 233,333\text{원}$ • 자기부담분 : $(1,200,000 - 1,161,173) \times 0.03 = 38,827 \times 0.03 = 1,164\text{원}$ → $233,333 - 1,164 = 232,169\text{원}$ 따라서 A씨와 B씨가 받는 지원금의 합은 $266,666 + 232,169 = 498,835\text{원}$이다	68 정답 ② A씨는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으므로 실제임차료를 전액을 지원받는다. • 실제임차료 : $2,000\text{만} \times 0.04 \div 12 + 20\text{만} = 266,666\text{원}$ - B씨는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크므로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는다. • 실제임차료 : $2,500\text{만} \times 0.04 \div 12 + 15\text{만} = 233,333\text{원}$ • 자기부담분 : $(1,200,000 - 1,161,173) \times 0.3 = 38,827 \times 0.3 = 11,648\text{원}$ → $233,333 - 11,648 = 221,685\text{원}$ 따라서 A씨와 B씨가 받는 지원금의 합은 $266,666 + 221,685 = 488,351\text{원}$이다.
		수정 사유	해설 수식 오류에 따른 수정
4 14~14p 번호 : 79	해설	79 정답 ③ ㄱ. F의 월평균소득은 2019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%로 70%보다 높다. 따라서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가구가 되더라도 1순위가 되지 않는다. ㄴ. F는 3순위에 해당되므로 2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적용받는다. 오답분석 ㄷ. F가 받을 수 있는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광역시의 3인 거주 형태이므로 1.5억 원이다. 여기서 임대보증금 2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4,800만 원이며, 1억 4,800만 원의 1%는 1,480만 원이다. 따라서 F는 연간 최소 1,480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	79 정답 ③ ㄱ. F의 월평균소득은 2019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%로 70%보다 높다. 따라서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가구가 되더라도 1순위가 되지 않는다. ㄴ. F는 3순위에 해당되므로 2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적용받는다. 오답분석 ㄷ. F가 받을 수 있는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광역시의 3인 거주 형태이므로 1.5억 원이다. 여기서 임대보증금 2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4,800만 원이며, 1억 4,800만 원의 1%는 148만 원이다. 따라서 F는 연간 최소 148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		수정 사유	해설 수식 및 정답 오류에 따른 수정
1 35~35p 번호 : 46	문제-문항	46. 다음 중 '대우충분'을 선택한 인원이 적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?(단, 인원은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버림한다.) ① 70대 이상 - 30대 - 40대 - 10대 - 20대 - 50대 - 60대. ② 70대 이상 - 10대 - 30대 - 40대 - 20대 - 50대 - 60대. ③ 70대 이상 - 10대 - 30대 - 40대 - 20대 - 60대 - 50대. ④ 70대 이상 - 10대 - 30대 - 60대 - 20대 - 40대 - 50대. ⑤ 10대 - 70대 이상 - 40대 - 60대 - 30대 - 20대 - 50대.	46. 다음 중 '대우충분'을 선택한 인원이 적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?(단, 인원은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버림한다.) ① 10대 - 30대 - 40대 - 20대 - 60대 - 50대 - 70대 이상. ② 10대 - 30대 - 40대 - 20대 - 50대 - 60대 - 70대 이상. ③ 10대 - 30대 - 60대 - 20대 - 40대 - 50대 - 70대 이상. ④ 10대 - 40대 - 60대 - 30대 - 20대 - 50대 - 70대 이상. ⑤ 60대 - 40대 - 10대 - 20대 - 50대 - 60대 - 70대 이상.
		수정 사유	문제 문항 오류에 따른 수정

위치

오류유형

수정 전

수정 후

1

45~45p

번호 : 59

문제-본문

59

다음은 행복카를 이용한 사람들의 대화이다.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?

김 씨 : 행복카를 이용해서 이번해를 30만 절약하여 타다가 연장을 해서 18분을 더 탔어. 그래도 7000원도 안 들더라.

이 씨 : 난 난 26세이고, 10개월 전에 연하를 취득해서 계속 운전은 해 왔는데 급히 갈 대가 있어 행복카를 이용하려 했는데 이용할 수 없대. 아기가 없어서 참나..

박 씨 : 렌트카랑 다르게 보합이 다 되어 있어서 안심이 돼서 이용하게 되었어. 일요일 밤 11시쯤 딸을 마중 나가려 두 번째로 저렴한 차를 1시간 빌렸고, 한 5km 운전했다? 6천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.

최 씨 : 나는 행복카 이용 중에 실수를 해서 사고를 냈어. 100만 원이 넘게 나와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고 파체르도 나왔다고 통보가 와서 직접 납부하러 가야 돼.

① 김 씨

② 이 씨

③ 박 씨

④ 최 씨

⑤ 없음

수정 사유

1

46~46p

번호 : 60

문제-문항

60

다음은 [L]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에 대한 자료이다. <보기>의 사항 중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1개월 월 임대료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?

• 전국임대
도시 내 저소득계층 중 비 전월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[L]가 주거지역을 제외한 후 적절하게 가입하려는 공동임대주택

• 임대대상
- 국공, 고시민, 외국인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(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 호), 전세대입, 동파, 00㎡, 단호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
- 최저거주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0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주거지 권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거지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=신원보증금으로 하는 1년간 과 시설의 주거기간을 합산하여 상환 가능
-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[L]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 된 범죄피해자

• 임차 가격
- 소득기준(월 소득 기준 이하인 자)

구분	A	B	C	D
월 임대료	1,302,574원	2,139,905원	2,213,449원	3,113,171원

• 대상주택
국민주택규모(전용 55㎡) 이하인 단독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(단, 1인 가구는 80㎡ 이하로 면적제한)

• 임대조건

구분	후생·고시민, 외국인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(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)이나 동파, 00㎡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	영리거주자
임대보증금	50만원	일반 전월임대주택과 동일
월 임대료	전세기준율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영 1% 이하에 해당	

<보기>

• A : 70억 초는 사람이 당해 수입이 없으며, 노숙인 시설에서 1개월 전부터 거주하였고, 그 전에 8개월 전 에 전월임에서 한 달간 머물렀다. 55㎡ 정도의 작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여, [L]는 임대보증금을 제외 하고 주거지권을 3,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.

• B : 15세, 12세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B는 월 250만 원의 수익이 있으나, 집을 구하기 위해 전년 겨울부터 올해 가을까지 계속 여안소에서 거주하고 있다. [L]는 55㎡의 아파트 임대료 8천 만 원 전액 지원하여 제공 할 예정이다.

• C : 신혼부부 자신이 없다. C 혼자 돈을 벌며 월 220만 원 정도 번다. 얼마 전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었 으며, 감히 큰 액은 법원의 복록 취함이 있어 새로운 거처에 주거지권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인정이 되고 [L]에 통보되었다. [L]는 임대보증금 포함 주거지권금 3,000만 원을 사용하 임대주택을 구할 예정이다.

㉠ 500,000원

㉡ 300,000원

㉢ 1,100,000원

㉣ 1,300,000원

1

46~46p

번호 : 60

문제-문항

60

다음은 [L]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에 대한 자료이다. <보기>의 사항 중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1개월 월 임대료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?

• 전국임대
도시 내 저소득계층 중 비 전월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[L]가 주거지역을 제외한 후 적절하게 가입하려는 공동임대주택

• 임대대상
- 국공, 고시민, 외국인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(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 호), 전세대입, 동파, 00㎡, 단호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
- 최저거주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0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주거지 권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거지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=신원보증금으로 하는 1년간 과 시설의 주거기간을 합산하여 상환 가능
-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[L]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 된 범죄피해자

• 임차 가격
- 소득기준(월 소득 기준 이하인 자)

구분	A	B	C	D
월 임대료	1,302,574원	2,139,905원	2,213,449원	3,113,171원

• 대상주택
국민주택규모(전용 55㎡) 이하인 단독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(단, 1인 가구는 80㎡ 이하로, 면적제한)

• 임대조건

구분	후생·고시민, 외국인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(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)이나 동파, 00㎡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	영리거주자
임대보증금	50만 원	일반 전월임대주택과 동일
월 임대료	전세기준율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영 1% 이하에 해당	

<보기>

• A : 70억 초는 사람이 당해 수입이 없으며, 노숙인 시설에서 1개월 전부터 거주하였고, 그 전에 8개월 전 에 전월임에서 한 달간 머물렀다. 55㎡ 정도의 작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여, [L]는 임대보증금을 제외 하고 주거지권을 3,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.

• B : 15세, 12세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B는 월 250만 원의 수익이 있으나, 집을 구하기 위해 전년 겨울부터 올해 가을까지 계속 여안소에서 거주하고 있다. [L]는 55㎡의 아파트 임대료 8천 만 원 전액 지원하여 제공 할 예정이다.

• C : 신혼부부 자신이 없다. C 혼자 돈을 벌며 월 220만 원 정도 번다. 얼마 전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었 으며, 감히 큰 액은 법원의 복록 취함이 있어 새로운 거처에 주거지권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인정이 되고 [L]에 통보되었다. [L]는 임대보증금 포함 주거지권금 3,000만 원을 사용해 임대주택을 구할 예정이다.

㉠ 500,000원

㉡ 795,000원

㉢ 1,100,000원

㉣ 1,300,000원

수정 사유

문제 문항 오류에 따른 수정

위치

오류유형

수정 전

수정 후

1

53~53p

번호 : 68

문제-문항

68. 다음은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자료이다. 자료를 참고하여 <보기>에서 제시된 A씨와 B씨의 상황에 따른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합으로 옳은 것은? 나

<주거급여 기준임대료> 나

(단위 : 원)

구분	1인 가가	2인 가가	3인 가가	4인 가가	5인 가가
1월	266,000 원	225,000 원	179,000 원	158,000 원	
2월	302,000 원	252,000 원	193,000 원	174,000 원	
3월	359,000 원	302,000 원	236,000 원	209,000 원	
4월	415,000 원	351,000 원	274,000 원	239,000 원	
5월	429,000 원	365,000 원	285,000 원	249,000 원	

<생계급여 산정기준> 나

(단위 : 원)

구분	1인 가가	2인 가가	3인 가가	4인 가가	5인 가가
생계급여수령자	507,153 원	397,594 원	1,161,173 원	1,424,752 원	1,633,331 원

*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입자가구에겐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를 적용한다.

* 선정기준 나

- 「소득인정액」: 생계급여 선정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(실제임대료) 중액을 지원 나

- 「소득인정액」: 생계급여 선정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(실제임대료)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나

- 「자기부담분」=[「소득인정액」-(생계급여 선정기준)]×30% 나

* 수급자의 실제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, 보증금은 연 4회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.

- 「실제임대료」=(보증금)÷4등÷12개월+(월차임) 나

* 단 자기부담분과 실제임대료 계산 시 1원 미만은 버림한다.

<보기>

A. 서울에 거주 중인 2인 가구 A씨

- 보증금 2,000만 원, 월차임 20만 원 나

- 소득인정액 65만 원 나

B. 경기도에 거주 중인 3인 가구 B씨

- 보증금 2,500만 원, 월차임 15만 원 나

- 소득인정액 120만 원 나

① 433,165원 ② 493,335원 나

③ 499,565원 ④ 500,450원 나

⑤ 515,930원 나

1

65~65p

번호 : 79

문제-본문

79. 다음 상황을 보고 <보기>의 설명 중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<상황>

F는 현재 부산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27세, 무주택 세대주이다.

F의 월평균소득은 2019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%이다.

F는 3인 공동거주 형태의 주거를 선호한다.

F는 삼척시에서 출생하였다.

F는 대학 소재지의 공공신용지역에 청년전세임대 신청을 하였다.

<보기>

G. F가 장애등급을 부여받으면 입주자격 1순위가 된다.

H. F가 청년전세임대 입주 시 적용받을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다.

D. F가 전세지원금 한도액을 모두 지원받으면, F가 납부할 임대료는 연간 1,000만 원 이상이다.

① G ② D

③ G, L ④ H, D

⑤ G, L, D

수정 사유

수정 사유

68. 다음은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자료이다. 자료를 참고하여 <보기>에서 제시된 A씨와 B씨의 상황에 따른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합으로 옳은 것은? 나

<주거급여 기준임대료> 나

(단위 : 원)

구분	1인 가가	2인 가가	3인 가가	4인 가가	5인 가가
1월	266,000 원	225,000 원	179,000 원	158,000 원	
2월	302,000 원	252,000 원	193,000 원	174,000 원	
3월	359,000 원	302,000 원	236,000 원	209,000 원	
4월	415,000 원	351,000 원	274,000 원	239,000 원	
5월	429,000 원	365,000 원	285,000 원	249,000 원	

<생계급여 산정기준> 나

(단위 : 원)

구분	1인 가가	2인 가가	3인 가가	4인 가가	5인 가가
생계급여수령자	507,153 원	397,594 원	1,161,173 원	1,424,752 원	1,633,331 원

*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입자가구에겐 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를 적용한다.

* 선정기준 나

- 「소득인정액」: 생계급여 선정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(실제임대료) 중액을 지원 나

- 「소득인정액」: 생계급여 선정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(실제임대료)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나

- 「자기부담분」=[「소득인정액」-(생계급여 선정기준)]×30% 나

* 수급자의 실제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, 보증금은 연 4회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.

- 「실제임대료」=(보증금)÷4등÷12개월+(월차임) 나

* 단 자기부담분과 실제임대료 계산 시 1원 미만은 버림한다.

<보기>

A. 서울에 거주 중인 2인 가구 A씨

- 보증금 2,000만 원, 월차임 20만 원 나

- 소득인정액 65만 원 나

B. 경기도에 거주 중인 3인 가구 B씨

- 보증금 2,500만 원, 월차임 15만 원 나

- 소득인정액 120만 원 나

① 483,165원 ② 488,351원 나

③ 499,565원 ④ 500,450원 나

⑤ 515,930원 나

수정 사유

문제 지문 오류에 따른 수정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